##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4335 제안연월일: 2024. 9.

제 안 자 : 환경노동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 가. 심사 경과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	경 과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0512호)	박홍배	2024. 6. 14.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 회의(2024. 9. 9.) 상정 후 제안설 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0535호)	박홍배	2024. 6. 17.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 회의(2024. 9. 9.) 상정 후 제안설 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0999호)	임이자	2024. 6. 26.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 회의(2024. 9. 9.) 상정 후 제안설 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1026호)	박 정	2024. 6. 27.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 회의(2024. 9. 9.) 상정 후 제안설 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나.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4. 9. 10.)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

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24. 9. 12.)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업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경우 사업의 특성이나 사업 시행에 따 른 환경영향 정도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절차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하는 등 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해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평가 및 협의절차를 맞춤형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둘째, 환경영향평가등의 재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을 보면, 사업승인 후 착공하지 못하고 5년이 경과하였지만 주변 여건 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와 유사한 미승인, 지연 등의 사유로 협의 후 5년이경과한 경우에는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셋째,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사 등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환경영향 평가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나, 실제로 대행받은 환경영향평가 서등 작성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자격기준이 없어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대한 신뢰도 저하 우려가 있음. 이에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대행받은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사람은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함.

넷째,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발주청이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없어 대행비용 산정기준 대비 저가 발주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저가 발주는 환경영향평가서등 거짓・부실 작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이에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경부장관이 정한대행비용 산정기준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 등의보완·조정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사업자나 승인기관의장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가 없어 현실 여건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보완 요구 등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므로,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대한 보완·조정 요청에 대해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환경 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자 등의 권리구제 기회를 강화하는 한편, 환경 영향평가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고자 함.

####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심층평가 대상에 대하여는 공청회 의무화 및 환경부장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52조의2).
- 나.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환경에 경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신속평가 대상에 대하여는 평가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평가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52조의3).
- 다. 신속평가 도입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함(안 제73조 등).
- 라. 협의한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재협의 규정을 정비함(안 제32조 및 제44조).
- 마.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사람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참여하지 않도록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함(안 제56조 등).
- 바. 발주청이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환경영 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반영하도록 규정함(안 제62조).
- 사.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보완·조정 요청을 하는 경우에 대한 이의신청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

법률 제 호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심층평가 대상과 제52조의3제2항에 따른 신속평가 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제28조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재검토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환경부장관에게 재검토 내용을"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관련 사항을"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신설한다.

- 이 경우 보완·조정의 요청은 두 차례만 할 수 있다.
- 1.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보완·조정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 2.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재검토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제32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다.
  -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되거나

승인등을 받고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되거나 승인등을 받고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승인 또는 확정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지연 중인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 4.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면적·길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 5. 제29조 또는 제31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 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으로 개발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협의 내용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는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중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경우로서 승인기관장등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있다.

법률 제20334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 제44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략할 수 있다"를 "다시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경과하지 아니한"을 "경과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상사업이"를 "대상사업의 승인 또는 확정이"로, "경과하지 아니한"을 "경과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③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및 승인기관장등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제42조제1항에 따라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경우로서 승인기관장등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장에 제52조의2 및 제5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심층평가 대상 결정 및 절차 등) ① 승인기관장 등 또는 제 24조제3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때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예 측·평가 등이 필요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심층평가 대상"이라 한

- 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이 포함되는는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어린이, 노인, 임산부, 저소득층 등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집단이 일정규모 이상 거주하는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에 따라 심층평가 대상을 결정하려는 경우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심층평가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 항평가를 실시하려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및 저감대책 등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공청회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층평가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환경정보 제공, 자

연환경 등 환경현황조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2조의3(신속평가 대상 결정 및 절차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실시하려는 사업자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실시하려는 사업자는 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신속한 조사·예측·평가 등이 필요한 사업(이하이 조에서 "신속평가 대상"이라 한다)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수 있다. 다만,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요청하여야 한다.
  - 1. 대상지역에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이 포함되지 않는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2. 대상지역에 어린이, 노인, 임산부, 저소득층 등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집단이 거주하지 않는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 쳐 신속평가 대상여부를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업자(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신속평가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는 사업계획시행 등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른 평가 항목
   ·범위 등의 결정,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주민 등의 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절차
-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 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절차
- ④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경우 승인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검토를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승인기관장등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거나 검토할 때에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⑥ 제3항에 따른 사업자나 제4항에 따른 승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제3항에 따른 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을 시행할 때에 그사업계획에 반영된 환경보전방안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⑦ 제6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통보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고, 사전공사의 금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사업착공등의 통보, 조치명령 및 환경보전방안의 이행·관리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 절차"는 "신속평가 절차(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말한다)"로, "협의 내용"은 "환경보전방안"으로 본다.
- 1.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 제34조부터 제40조까지 및 제40조의2의 규정
-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
- ⑧ 제3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사 업자는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 대상사업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⑨ 제1항에 따른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제1항제1호 중 "평가서 초안 및 평가서"를 "평가준비서 및 평가서 초안, 평가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33조"를 "제33조 및 제52조의3"으로 한다.

제56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제62조의3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사람에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게 하지 말 것
- 제62조의 제목 중 "산정기준"을 "산정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발주청은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73조제1호 중 "제40조제2항"을 "제40조제2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40조제4항"을 "제40조제4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47조제3항"을 "제47조제3항 및 제52조의3제7항제2호"로 한다.

제74조제1항제1호 중 "제36조제1항"을 "제36조제1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49조제2항"을 "제49조제2항 및 제52조의3제7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제49조제2항"을 "제49조제2항 및 제52조의3제7항제1호·제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 제3호의3 및 제5호의2를 각각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34조제1항 및 제52조의3제7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속평

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자 3의3. 제52조의3제8항 후단을 위반하여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자

5의2. 제56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사람에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게 한 자

제76조제1항제1호 중 "제40조제1항"을 "제40조제1항(제52조의3제7항제 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40조제4항"을 "제40조제4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36조제1항"을 "제36조제1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36조제2항"을 "제36조제2항(제52 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2 중 "제49조제2항"을 "제49조제2항 및 제52조의3제7항제2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제35조제2항"을 "제35조제2항(제 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 은 항 제2호 중 "제35조제3항"을 "제35조제3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36 조제1항"을 "제36조제1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37조제1항"을 "제37조제

1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38조제2항"을 "제38조제2항(제52조의3제7항 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2조 및 법률 제20334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 제44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심층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5호,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4조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 등을 심의하기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보완·조정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보완·조정을 요청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4조(재협의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 및 법률 제20334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 제4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32조제1항 각 호 또는 법률 제20334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 제4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재협의를 요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 6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① 환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① -
경부장관, 계획 수립기관의 장,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승인	
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승	
인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	
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영	
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5.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심층
	평가 대상과 제52조의3제2항
	에 따른 신속평가 대상 결정
	에 관한 사항
<u>5.</u> (생 략)	<u>6.</u>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제2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 ② (생 략)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③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	
등을 보완·조정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 등에게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 등의 보완·조정을 요청하거나 보완·조정을 사업자 등에게 요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조정의 요청은 두 차례만 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 ⑤ (생 략)
- ⑥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재검토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환경부장관에게 재검토 내용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요청의 절차 및 조정 여부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신 설>

⑦ (생략)

	이 경우	보완·	조정의
요청은 드	두 차례만	할 수	있다.

- ④·⑤ (현행과 같음)
-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관련 사항을-----------
  - 1.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보완・조정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 2.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재검토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 (7) (현행과 같음)

- 제32조(재협의) ① 승인기관장등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1.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거나
    사업계획 등을 확정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경우. 다만,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경우로서 승인기관장등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면

     적·길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가

     시키는 경우
  - 3. 제29조 또는 제31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 내용에서 원

     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

     록 한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개발

제32조(재협의) ①	

-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절되거나 승인등을 받고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되거나 승인등을 받고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로서 협의 대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승 인 또는 확정이 환경부장관 과 협의를 거친 후 지연 중 인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 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 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협의 내용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시행하는 것

   이 맞지 아니하는 경우

- ② 승인기관장등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협 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절되거나 승인등을 받고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로서 협의 대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

- 4.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면 적·길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가 시키는 경우
  - 5. 제29조 또는 제31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 내용에서 원 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 목 한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협의 내용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시행하는 것 이 맞지 아니하는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인기 관장등은 제1항제1호부터 제3 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중 주 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경우 로서 승인기관장등이 환경부장 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지연 중인 경우로서 협의 내 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 과하지 아니한 경우

③ (생 략)

법률 제20334호 환경영향평가법 법 일부개정법률

제44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저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② (생 략)

<신 설>

③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
자 및 승인기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
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

③ (현행과 같음)
법률 제20334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
세44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
자 및 승인기관장등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
여 제42조제1항에 따라 시・도
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를 실시한 경우 제1항 및 제2
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
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을 생
략할 수 있다.
<u>4</u>
다시 하여야 한다. 다

서 신설>

-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 업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되거나 승인등을 받고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 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 우
-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u>대상사</u> 업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지연 중인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 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 업에 대하여 제42조제1항에 따라 시·도의 조례에 따른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경우로서 승인
기관장등이 환경부장관과 협의
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1
<u>경과한</u>
2대상사
업의 승인 또는 확정이
경과한
<삭 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④ (생 략)

 <신 설>

⑤ (현행과 같음)

제52조의2(심층평가 대상 결정 및 절차 등) ① 승인기관장 등 또는 제24조제3항에 따른 환경 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때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심의를 거쳐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예측·평가 등이 필요한 사업(이하이 조에서 "심층평가 대상"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생 대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 이 포함되는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것으 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어린이, 노인, 임산부, 저소득층

등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 감한 집단이 일정규모 이상 거주하는 등 생활환경에 미 치는 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경우

②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에 따라 심층평가 대상을 결정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심흥평가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에 대하여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및 저감대책 등에 대한 주민 등의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한는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 설>

온라인 공청회 개최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 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주민 등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층평가 대상으로 결정된 사 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내 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환경 정보 제공, 자연환경 등 환경현 황조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2조의3(신속평가 대상 결정 및 절차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을 실시하려는 사업자 또는 소 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실시하려는 사업자는 대상사업 이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 하는 경우 평가준비서를 작성 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신속한 조 사·예측·평가 등이 필요한 사업 (이하 이 조에서 "신속평가 대 상"이라 한다)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 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요청 하여야 한다.
- 1. 대상지역에 생태계의 보전가 치가 큰 지역이 포함되지 않 는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 향이 경미할 것으로 예상되 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 우
- 2. 대상지역에 어린이, 노인, 임 산부, 저소득층 등 환경유해 인자 노출에 민감한 집단이 거주하지 않는 등 생활환경 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할 것 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및 환경영향평가협의 회 심의를 거쳐 신속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업자(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의 경 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을 포함

한다)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 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속평가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사항을 생략할수 있다. 다만,사업자는 사업계획 시행 등에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한다.

- 1.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 제24 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른 평가 항목 · 범위 등의 결정,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주민 등의 의견수렴, 환경영 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 청 등 절차
-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절차
- ④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

자는 제3항에 따라 환경보전방 안을 마련하는 경우 승인기관 의 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검토를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검토결과 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승인기관장등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거나 검토할 때에 환경 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사업자나 제4항에 따른 승인기관의 장은 제
- 항에 따른 승인기관의 장은 제 3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사 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제3 항에 따른 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을 시행할 때에 그 사업계획 에 반영된 환경보전방안을 이 행하여야 한다.
- ① 제6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통보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고, 사전공사의 금지, 사후환경영향조

사, 사업착공등의 통보, 조치명 령 및 환경보전방안의 이행· 관리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 절차"는 "신속평가 절차(제1항 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말한다)"로, "협의 내용"은 "환 경보전방안"으로 본다.

- 1.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제34조부터 제40조까지 및 제40조의2의 규정
-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규정
- ⑧ 제3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사업자는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이경우 전단에 따른 절차를 거치

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지 ①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 를 작성할 때에는 제54조제1항 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 록을 한 자(이하 "환경영향평 가업자"라 한다)에게 그 작성 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환경영향평가등의 <u>평가서 초</u>
   안 및 평가서
- 2.·3. (생략)
- 4. 제33조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 ② ~ ⑥ (생 략)

제56조(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 저사항) ① 환경영향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한다.

1. ~ 6. (생략)

	전에 대상사업의 공사를 하여
	<u>서는 아니 된다.</u>
	⑨ 제1항에 따른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
	<u>다.</u>
ᅦ	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①
	· 1평가준비
	서 및 평가서 초안, 평가서
	2.·3. (현행과 같음)
	4. 제33조 및 제52조의3
	② ~ ⑥ (현행과 같음)
ᅦ	56조(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
	사항) ①
	1. ~ 6. (현행과 같음)

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 <신 설>

② (생략)

제62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생 략)

<신 설>

-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73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 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34조제3항 및 제40조제2항 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이 행하지 아니한 자
  - 2. 제34조제4항 또는 제40조제4 <u>항</u>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또 는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7. 제62조의3제2항에 따리	<u> 인정</u>
<u>받은 환경영향평가기</u>	술자가
아닌 사람에게 환경영	향평가
서등을 작성하게 하지	<u>말 것</u>
② (현행과 같음)	
]62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비용의 <u>산정기준 등</u> )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0 2724 2222	

② 발수청은 환경영향평가업자 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때 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 1항에 따른 산정기준을 반영하 여야 한다.

- 1. -----제40조제2항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 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 2. -----<u>제</u>40조제4 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아니한 사업자	<u>한다)</u>
3. <u>제47조제3항</u> 에 따라 준용되	3. <u>제47조제3항 및 제52조의3제</u>
는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u> 7항제2호</u>
따른 공사중지명령 또는 조	
치명령(원상복구명령만 해당	
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세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제74조(벌칙) ①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크 필급에 시인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	1. 제36조제1항(제52조의3제7항
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아니	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한 사업자	를 포함한다)
1의2. (생 략)	1의2. (현행과 같음)
2. <u>제49조제2항</u> 에 따라 준용되	2. <u>제49조제2항 및 제52조의3제</u>
는 제40조제2항 또는 제4항	<u> 7항제2호</u>
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	
니한 사업자	
2 - 7 (제 라)	9 - 7 (처체코 카O)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②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
   ----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에 처한다.
   ----
- 1.·2. (생략)
- 3. 제39조제2항(<u>제49조제2항</u>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 거나 출입·조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신 설>

<신 설>

<u>.</u>
1.·2. (현행과 같음)
3 <u>제49조제2항 및</u>
<u>제52</u> 조의3제7항제1호·제2호-
3의2.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 3의2.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34조제1항 및 제52조의3제7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속평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자
- 3의3. 제52조의3제8항 후단을 위반하여 제24조부터 제29조 까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아니하거

4.·5. (생략) <신설>

6. ~ 8. (생 략)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 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 자
- 2. <u>제40조제4항</u>에 따른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3. (생략)

- ② (생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

나 절차가 끝나기 전여	에 공사
<u>를 한 자</u>	
4.·5. (현행과 같음)	
5의 제56조제1하제7ㅎ	르 의바

5의2. 제56조제1항제7호를 위반 하여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사람에게 환경영향평가 서등을 작성하게 한 자

6. ~ 8. (현행과 같음)

제76조(과태료) ①	

1. <u>제40조제1항(제52조의3제7항</u> <u>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u> <u>를 포함한다)</u>-----

\_\_\_\_\_

2. 제40조제4항(제52조의3제7항 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를 포함한다)-----

-----

- 3.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3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 후환경영향조사의 일부를 하 지 아니하 자
- 2. <u>제36조제2항</u>을 위반하여 통 보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2의2. <u>제49조제2항</u>에 따라 준용 되는 제40조제1항 또는 제4 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명령 (공사중지명령 또는 원상복 구명령은 제외한다)을 이행 하지 아니한 자
- 3. ~ 5. (생략)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u>제35조제2항</u>을 위반하여 관 리대장에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갖추

1. 제36조제1항(제52조의3제7항
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를 포함한다)
2. 제36조제2항(제52조의3제7항
를 포함한다 <u>)</u>
2의2. <u>제49조제2항 및 제52</u> 조의
3제7항제2호
3. ~ 5. (현행과 같음)
<ul><li>4)</li></ul>
1. 제35조제2항(제52조의3제7항
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11-1 1-1 1-0-16 01

를 포함한다)----

어 두지 아니한 자	
2. <u>제35조제3항</u> 을 위반하여 관 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 거나 지정한 사실을 통보하 지 아니한 자	2. 제35조제3항(제52조의3제7항 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를 포함한다)
3. <u>제36조제1항</u> 을 위반하여 사 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보 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제1항(제52조의3제7항 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를 포함한다)
4.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준공·중지 또는 재개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4. 제37조제1항(제52조의3제7항 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를 포함한다)
5.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사유 등 환경부렁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한자	5. 제38조제2항(제52조의3제7항         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를 포함한다)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⑤ · ⑥ (생 략)	⑤ · ⑥ (현행과 같음)